겸임교수임용규정

제정 2003. 06. 27.
제6차 개정 2018. 01.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겸임교수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겸임교수라 함은 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서 강의를 수행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

제3조(자격) ① 겸임교수는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의 국가인정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기술사 및 이에 상당하는 중요 전문분야의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
② 교수자격에 합당한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문분야 종사경력이 학사 학위취득자는 10년 이상, 석·박사학위취득자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임용절차) 겸임교수의 임용은 학과(부)장,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02.15, 2017.05.25)

제5조(구비서류) 겸임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임교수 임용추천서
2. 이력서 및 교육·학문상 업적목록
3. 강의 담당과목 배정현황
4. 학위 및 경력증명서
5. 재직증명서
6. 재직기관장의 겸직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6조(임용기간) ①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4.25)
②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때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만료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및 처우) ① 겸임교수는 학기당 3시간 이상 9시간 이하의 강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2016.02.15., 2018.01.16)
② 겸임교수의 보수는 강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2.15)
③ 겸임교수는 본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면직)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1. 본직 기관의 직이 상실된 경우
2.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대우교수·겸임교수 임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대우교수·겸임교수임용규정에 의거 임명된 교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으로 본다.

부칙 (기획예산과-10, 2006.1.4)

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84, 2008.7.7)

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14, 2012.4.25)
이 규정은 2012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9, 2016.02.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2월0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 임용된 교원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용잔여기간에 한하여 개정된 규정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부-230, 2017.05.29)
이 규정은 2017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8, 2018.01.16)
이 규정은 2018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